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491호
2. 제 안 자 : 이민옥 의원 외 33명
3. 제안일자 : 2023년 01월 27일
4. 회부일자 : 2023년 02월 06일

###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현행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
- 그러나 설립 및 운영 뿐만 아니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갈등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 등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평상시보다 더 큰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등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와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와 결과의 공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현황과 최근 동향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현재 20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운영 중임(참고자료).

- 그러나 지난 10년간 출자·출연 기관의 수와 정원, 지원 예산 등이 급증하면서 기능중복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

<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현황 >

구분	2013년	2016년	2019년	2023년
출자·출연 기관	11곳	14곳	19곳	20곳
정원	2,617명	3,113명	5,444명	6,608명
전체 예산 규모	6,916억원	7,371억원	1조 112억원	1조 5,611억원
서울시 출연금	1,755억원	2,334억원	3,892억원	5,259억

- 이에 서울시는 성과저조 기관<sup>1)</sup> 등에 대한 조직혁신 추진방안을 수립(2022.7.)하고, 업무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4개<sup>2)</sup>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2개<sup>3)</sup> 기관의 통합 여부는 6월에 재판단하기로 함<sup>4)</sup>.
- 향후 통폐합 대상 기관들에 대한 세부 통합설계안을 마련(2023.4.)하고, 조례 정비(2023.6.) 후 법적 해산절차를 이행(2023.11.)할 예정임.

1)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 설립후 3년이 경과된 기관, 최근 3년 이내 ‘라’등급 또는 ‘다’등급 2회 이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총 9개 기관임.

2)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3)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2022.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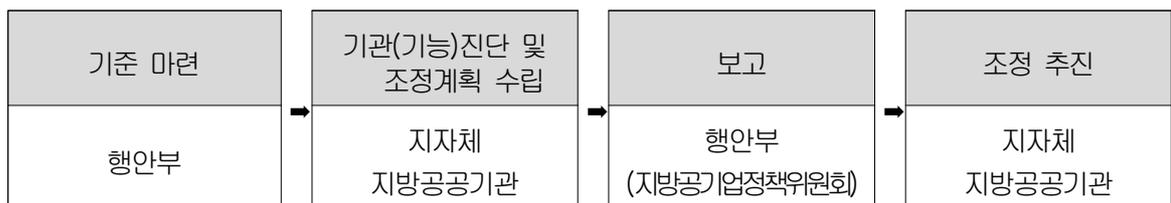
-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2022.9)을 통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통폐합 등의 기능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5개 분야의 혁신 방향을 제시함.

### <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

유형	기능 조정 기준
기관 통·폐합	①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 추진 ② 소규모 인력(예: 10인 이하)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유사기관과 통합 추진 ③ 설립목적 달성이었거나 향후 존속 시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④ 외연확장 수단, 과다 인력해소, 일시적 사업추진으로 설립된 자회사 및 관련 법인의 통합 또는 폐지
기능 조정	① 지방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 ② 지방공공기관 내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 ③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협업	○ 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공동설립, 계약 등을 통한 협업 추진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은 유사·중복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게 됨.

### <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계획 절차 >



## 다. 통폐합 등의 절차 과정 신설 (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검토 결과 공개, 시민 의견수렴 등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준하는 절차<sup>5)</sup>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통폐합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통폐합으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각 기관의 정관을 따르도록 함<sup>6)</sup>.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설립에 준하는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여 정치적 필요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작위적인 통폐합을

- 
- 5)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음.

-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의 설립 절차를 통폐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로 볼 수 있고 실효성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시로 하고, 공포 이후 통폐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음(안 제2조).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안 제5조의2제5항), 규칙에서 구체적인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시점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규칙 제정 이전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폐합이 결정되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에는 개정안의 통폐합 절차 적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거나 이미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용대상과 시점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2.11.24.)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 [참고자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2023.01.31일 현재)

구분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b>설립목적</b>	-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 연구	-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b>설립근거</b>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b>설립일</b>	'82. 9. 30.	'92. 7. 14.	'98. 3. 31.	'99. 6. 7.	'99. 7. 1.	
<b>대표자(임기)</b>	송관영(63년생) ('20. 6. 1.~'23. 5. 31)	박형수(67년생) ('22. 3.10.~'25. 3. 9.)	김현우(65년생) ('21.11. 2.~'24.11. 1.)	주철수(60년생) ('21.12.1.~'24.11.30.)	안호상(59년생) ('21.10. 1.~'24.09.30.)	
<b>조직</b>	6부 4실 1본부, 7센터 25진료과 28팀, 1연구소, 2위원회	감사실, 1본부, 1단, 3실, 4센터	3실 8본부 1단 1센터 40팀	2부문 2실 6부 3센터 / 4지역본부 25지점 6센터	3본부 1실 15팀 9예술단 (ITF)	
<b>정원내</b>	정원	1,953명	234명	518명(임원3 포함)	488명(임원3 포함)	526명
	현원	1,689명	221명	510명	479명(임원2 포함)	426명
<b>정원외</b>	무기	-	1명	-	-	-
	기간제	111명	54명	25명	161명	30명
	단시간	10명	1명	5명	-	-
<b>이사</b>	정원	13명	15명	15명	8명	15명
	현원	10명	11명	12명	8명	13명
<b>감사</b>	정원	1명	2명	2명	1명	2명
	현원	1명	1명	2명	1명	2명
<b>'23 예산</b>	당초 예산	2,333억원	391억원	2,350억원	5,123억원	615억원
	예산 현액	2,444억원	391억원	2,490억원	5,175억원	615억원
<b>서울시비</b>	~'22 (누적액)	2,461억원	4,104억원	6,187억원	6,846억원	5,695억원
	'23	919억원	316억원	565억원	168억원	413억원
<b>주요사업</b>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 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당면과제 조사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시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한 기업매출 증대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R&D지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서울시 주요거점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산업거점 활성화 -콘텐츠 제작, 기술, 마케팅 지원 등 종합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채권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	-재중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 행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 사업	

구분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설립목적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설립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설립일	'02. 1. 24.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대표자(임기)	정연정(68년생) ( '21.8.23.~'24.8.22.)	김상철(64년생) ( '21.11. 4.~'24.11.3.)	이창기(59년생) ( '21.10.18.~'24.10.17.)	손은경(69년생) ( '21.10.1.~'24. 9. 30.)	이경돈(58년생) ( '21.10.1.~'24.9.30)	
조직	2본부, 7실	1전략관·2실, 2본부·1실, 3센터·1지원단	3본부 9실 25팀 8단위조직	1본부 5팀 1감사역 1교향악단	1관 3본부 5실	
직원내	정원	171명	187명	232명	164명	
	현원	159명	185명	229명	134명	
정액외	무기	-	-	-	-	
	기간제	25명	33명	30명	-명	
	단시간	0명	-	-	-	
이사	정원	21명	10명	15명	15명	
	현원	13명	9명	14명	14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1명	
	현원	2명	1명	1명	1명	
'23 예산	당초 예산	309억원	810억원	656억	227억원	533억원
	예산현액	309억원	810억원	865억	227억원	533억원
서울특별시	~'22(누적액)	1,409억원	4,696억원	4,907억원	2,169억원	3,123억원
	'23	165억원	759억원	568억원	154억원	296억원
주요사업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의 평가·집자 및 인증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의 행사·서비스 -공익사업의 평가·보충에 필요한 지원 -국내외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 보육 분야 관련 사업 및 시설 운영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보호, 공익·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법률·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DDP 운영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공공성강화 -디자인문화확산 -생활용품디자인운영	

구분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설립목적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과 청소년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하고, 서울 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설립근거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09. 1. 8.	'15. 3. 12.	'16. 4. 28.	'16. 5. 25.	'17. 4. 24.	
대표자(임기)	이희승(67년생, 이사장 직무대행) ('23. 1. 1. ~ 신입이사장 선임시까지)	이희승(67년생, 원장 직무대행) ('22. 8. 19. ~ 신입 원장 임명시까지)	이희승(67년생, 대표이사 직무대행) ('22. 8. 19. ~ 신입대표이사 임명시까지)	강요식(61년생) ('21. 9. 13. ~ '24. 9. 12.)	이이재(59년생) ('21. 8. 2. ~ '24. 8. 1.)	
조직	1사무국 2부	2국 9팀 1센터	2본부 1실	1실 1본부 7팀	1실 2본부 14팀	
정원내	정원	13명	77명	127명	45명	423명
	현원	11명	72명	122명	39명	416명
정원의외	무기	-	-	8명	-	11명
	기간제	-	4명	12명	2명	-
	단시간	-	-	-	-	-
이사	정원	11명	11명	10명	8명	10명
	현원	10명	5명	5명	6명	6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2명	1명
	현원	2명	1명	2명	2명	1명
'23 예산	당초 예산	106억원	102억원	187억원	88억원	286억원
	예산 현액	106억원	102억원	187억원	88억원	286억원
특별회계비	~ '22 (누적액)	1,610억원	490억원	931억원	502억원	1,320억원
	'23	98억원	95억원	176억원	78원	267억원
주요사업	-대학생 장학사업 (대학분야, 진로활동, 공익 인재, 평화희망, 직업전문 학교, 우수인재, 독립유공자후손) -고등학생 장학사업 (고교진로, 예체능, 하나고, 서울꿈길.)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멘토링, 리더 육성, 아카데미,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듬의학교 운영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사업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장년층 일모델 개발 및 확산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 개발 및 실태조사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발굴	-디지털 정책연구 -AI·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로봇활용 디지털서비스 지원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 현실 서비스 운영	-시장·구정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 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 운영 및 관리	

구 분	공 공 보 건 단	기 술 연 구 원	관 광 재 단	사 회 서 비 스 원	미 디 어 재 단	
	T	B	S			
설립목적	-서울시 보건의로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로 기관·지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전달기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업계와 협력하면서 서울 관광의 지속성장을 전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설립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7. 7. 6.	'18. 3. 27.	'18. 4. 23.	'19. 2. 28.	'20. 2. 17.	
대표자(임기)	박유미(66년생, 대표이사 직무대행) ( '22. 11. 8. ~ 신임대표이사 임명시까지)	임성은(72년생) ( '22.4.21 ~ '25.4.20.)	길기연(60년생) ( '21.7.26. ~ '24.7.25.)	황정일(63년생) ( '21. 10. 28. ~ '24.10.27.)	정태익(65년생) ( '23. 2. 6. ~ '26.2.5)	
조직	4본부 1실	1본부 7실	2본부 14팀 1TF	3실 8팀	2실 5본부 29팀	
정원내	정원	53명	108명	159명	572명	398명
	현원	49명	95명	145명	445명	352명
정원외	무기	1명	-	-	-	-
	기간제	5명	15명	25명	54명	19명
	단시간	-	-	-	-	2명
이사	정원	10명	10명	15명	10명	11명
	현원	9명	7명	8명	9명	10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2명	1명
	현원	2명	2명	1명	2명	1명
'23 예산	당초 예산	65억원	184억원	619억원	321억원	320억원
	예산현액	65억원	184억원	619억원	321억원	320억원
시출연비	~ '22 (누적액)	192억원	668억원	2,010억원	603억원	998억원
	'23	52억원	116억원	581억원	689억원	232억원
주요사업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 및 평가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보건의로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물순환 및 하천관리 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시장 조사 연구 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등 방송사항 전반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